

제 호

운행중지명령서

소유자	성명(상호)
	주소(사업장)

자동차 등록번호

위반 내용

위 자동차에 대하여 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2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7에 따라 운행중지를 명령합니다.

년 월 일

시·도지사

직인

유의사항

- 위 운행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71조제7항제1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.